

2006. 4. 25(화)

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
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

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(보고자 : 전문위원 황성만)

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

1. 심사경과

- 가. 2006. 3. 7 : 성재운 의원 외 6인 발의
- 나. 2006. 3. 7 : 의회운영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2006-11호)
- 다. 2006. 3.15 :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의결
- 라. 2006. 4. 4 : 조례안 재의 요구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19322호, 2006. 1. 1) 되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방의회 의원에 지급하는 비용 중 “회의수당”을 “의정활동비”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다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황성만)

-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19322, 2006. 1. 1)

공포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-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중 “회의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하고, 제4조제1항제1호 “회의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제4조제1항제2호 “회의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개정하였으나
- 이는 “의정활동비”보다 “월정수당”의 금액이 높기 때문에 “월정수당”으로 개정하였으나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2항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맞지 않아 “회의수당”을 “의정활동비”로 개정하여야 하며,
- 제2조제2호의 “월정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”를 “의정활동비라 함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”로 개정하여야 하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